

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(안 제2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의 제목 중 “정보와 교육”을 “정보와 교육 및 성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(이하 “발달장애인 성교육”이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
2.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·사법절차지원 체계
3. 발달장애인을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서비스
4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 한 <u>정보와 교육</u> 의 내용 및 방 법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0조(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 한 <u>정보와 교육 및 성교육</u> 의 내용 및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(이하 “발달장애인 성교육”이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</u> 1. <u>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</u> 2. <u>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·사 법절차지원 체계</u> 3. <u>발달장애인을 위한 상담·치 료 및 교육서비스</u> 4. <u>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 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</u>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조와 같음)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조와 같음)